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진천 의원)

의안 번호	20-118
----------	--------

발의년월일 : 2020. 8. .

발 의 자 : 김진천,강명숙,권영숙  
김종선,서종수,이민석  
정혜경,조영덕,최은하

## 1. 제안이유

마포구민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감염병 예방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 나. 무료 예방접종대상을 규정(안 제2조)
- 다. 무료 예방접종의 실시 등을 규정(안 제3조)
- 라.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계약 해지 등을 규정(안 제4조~안 제5조)
- 마. 무료 예방접종 신청 및 지원절차를 규정(안 제6조)
- 바. 무료 예방접종 비용 및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등을 규정  
(안 제7조~안 제8조)

사. 비용상환 이의신청을 규정(안 제9조)

아.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을 규정(안 제10조)

**3.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6조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5. 입법예고:** 2020. 8. 28.~2020. 9. 1.

**6. 조례안 :** 붙임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알맞은 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접종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무료 예방접종”이라 한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한다.

1.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접종일 현재 마포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기타 보  
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자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교사 및 종사자

다. 환경미화원(직영, 대행 외부작업자 및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

라.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경비원(외부 근무자)

마.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회사, 개인택시 운전사 등 대중교통 운전사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  
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환자활동 도우미 등 환자 직접 접촉 근무자)

사. 「모자보건법」 제15조, 제15조18에 의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아. 「아동복지법」 제44조2에 따른 돌봄센터 종사자, 제5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무료 예방접종은 매년 1회에 한하여 실

시한다.

- ② 무료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되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위탁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의료기관이 위탁계약서상 위탁계약 조건을 어겼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무료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과 같게 정한다.

**제8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상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예방접종비용의 상환 신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비용상환 이의신청)** 위탁의료기관은 비용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2호의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무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관 계 법 령】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를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중

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제2조(무료지원대상), 제3조(무료 예방접종의 실시 등)
- 나. 수입발생 요인 : 없음

##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2020. 9. ~ 2024. 12.(52개월)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세입	국시비		2,222,464	1,528,646	1,605,076	1,685,329	1,769,609	8,811,124
	소계(a)		2,222,464	1,528,646	1,605,076	1,685,329	1,769,609	8,811,124
세출	생후6개월~59개월 (30:35:35)		384,611 (구비 115,575)	403,841 (구비 117,113)	424,033 (구비 122,969)	445,234 (구비 129,117)	467,495 (구비 135,557)	2,125,214 (구비 620,331)
	유치원 및 초등학생 (30:35:35)		434,854 (구비 126,558)	456,596 (구비 132,412)	479,425 (구비 139,033)	503,396 (구비 145,984)	528,565 (구비 153,283)	2,402,836 (구비 697,270)
	중1 (30:35:35)		46,806 (구비 13,620)	49,146 (구비 14,252)	51,603 (구비 14,964)	54,183 (구비 15,713)	56,892 (구비 16,498)	258,630 (구비 75,047)
	중2-고3 (30:35:35)		337,134 (구비 97,769)	0	0	0	0	337,134 (구비 97,769)
	62세-64세 (30:35:35)		288,198 (구비 84,398)	0	0	0	0	288,198 (구비 84,398)
	65세이상 (30:35:35)		1,163,012 (구비 339,434)	1,221,162 (구비 354,136)	1,282,220 (구비 371,843)	1,346,331 (구비 390,435)	1,413,647 (구비 409,957)	6,426,372 (구비 1,865,805)
	임신부 (30:35:35)		21,212 (구비 6,185)	22,272 (구비 6,458)	23,385 (구비 6,781)	24,554 (구비 7,120)	25,781 (구비 7,476)	117,204 (구비 34,020)
	취약계층 (구비 100)		61,600 (구비 61,600)	64,680 (구비 64,680)	67,914 (구비 67,914)	71,309 (구비 71,309)	74,874 (구비 74,874)	340,377 (구비 340,377)
	서울형 (시 65:시특교 35)		330,176	0	0	0	0	330,176
	소계(b)		3,067,603 (구비 841,139)	2,217,697 (구비 689,051)	2,328,580 (구비 723,504)	2,445,007 (구비 759,678)	2,567,254 (구비 797,645)	12,626,141 (구비 3,815,017)
□ 총비용(b-a)			△845,139	△689,051	△723,504	△759,678	△797,645	△3,815,017

## 4. 재원조달 방안

- 국 26% · 시비(특별교부금 포함) 47% · 구비 27%
- (국:시:구 30:35:35 건당 1,750원 시비지원)

## 5. 덧붙이는 의견 : **구체적인 세입 및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

## 6. 작성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수지 (☎ 3153-9074)